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서·벽지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전기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전액 지원〉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14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9.
3.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¹⁾의 운영에 드는 비용에서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운영결손액”으로 정의하고(안 제20조제4항), 전력산업기반기금²⁾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³⁾ 중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및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은 그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각 호의 문언을 “운영결손액”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이 법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에 관하여는 같은 취지의 법률안 2건이 각각 심사 중임.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10218)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전액을 지원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5. 9. 25.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26년 8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진행되고 있음.

-
- 1) 자가발전시설: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함(「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 2)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688)은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재정융자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2026. 3. 24. 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개정안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 ----- ----- <u>사용하는 비용의 운영결손액</u> -----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5. ----- ----- <u>운영결손액</u> ----- -----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안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가발전시설의 인수, 전기공급 및 운영에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함.

육지의 발전소 및 송전·변전설비와 연계하기 어려운 섬 지역에는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은 125개 도서이며, 그 중 65개 도서는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22개 도서는 지방자치단체가, 38개 도서는 주민이 각각 자가발전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농어촌전기공급사업 대상 도서 현황]

구분	주민 관리	지방자치단체 관리	전기사업자 관리	합계
도서 수(개)	38	22	65	125
고객호수(호)	158	2,050	38,182	40,390
발전설비(kW)	1,433	8,471	98,071	107,97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2025년 1월 기준)

도서 지역의 자가발전시설은 규모가 작아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그 운영 과정에서 전기요금 수입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결손액이 발생함.

현행법은 전기사업자가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에서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전액을 전기사업자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제20조제3항 및 제4항).⁴⁾

그리고 제20조의2는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위 각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사업법」 제49조제4호는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을 기금의 사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⁵⁾, 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징수됨⁶⁾.

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戶)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5)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3. (생략)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12.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결손액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었으며, 기금 지원액은 2022년 1,858억 9,500만원에서 2026년 1,149억 5,200만원으로 감소하였음.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기금 지원액	185,895	175,526	162,882	115,034	114,952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예산액 기준, 추가경정예산 포함)

2025년도 예산부터 사업비의 75%만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편성된 것이 그 요인의 하나임.

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전기사업법 제20조가 보조율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지원비율은 해당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예산 편성 결과라고 설명함.⁷⁾

2026년도 예산도 같은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 6)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7)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2026년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예산 설명자료는 내역사업별 보조율을 기재하면서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에서는 보조율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좌측의 지원비율(75%)은 동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닌, 최종적 예산 편성 결과임)”이라고 적고 있음.

[2026년도 농어촌전기공급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사업비	기금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관리 도서 결손지원	11,460	8,595
기술지원	1,094	821
전기사업자 관리 도서 결손지원	104,568	78,426
투자비	36,018	27,013
소계	153,140	114,855

주) 위 표 외에 재정융자금 보전 9,7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한 2026년도 기금 지원액 합계는 1,149억 5,200만원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

기금에서 지원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 금액을 2026년 기준 약 504억원으로 추산하였음.⁸⁾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 예산 설명자료에서 2001년부터 2024년까지와 같이 도서 자가발전시설의 운영결손액 및 전기사업자 관리 도서의 투자비⁹⁾에 대하여 기금에서 100%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도서·벽지 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결손액에 대한 지원 비율은 법률이나 하위 법령이 아니라 매년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하여지고 있음.

8) 위 예산 편성 내역상 전체 사업비와 기금 지원액의 차액은 382억 8,500만원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추산액은 이와 산정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그 산정근거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9) 투자비: 전기사업자가 관리하는 도서의 발전·배전 및 업무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2026년도 예산 설명자료에서는 백령도 163억 8,900만원, 울릉도 57억원, 배전 및 업무시설 등 139억 2,900만원을 그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개정안은 기금에서 지원할 비용의 범위와 지원 수준을 법률에 분명히 하여 사업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이 도입하는 “운영결손액”이라는 용어의 적용 범위, 의무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안 제20조의2제4호 및 제5호로 한정하는 방식, 본문과 단서의 규정 방식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운영결손액”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20조제4항은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에서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운영결손액”으로 정의하고 있음.

안 제20조의2제4호는 현행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의 운영결손액”으로 변경하고 있음.¹⁰⁾

이와 관련하여 “운영결손액”을 정의한 제20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10) 개정 전후의 문언은 다음과 같음.

〈현행 제20조제4항〉 …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안 제20조제4항〉 …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에서 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현행 제20조의2제4호〉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안 제20조의2제4호〉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의 운영결손액

관리하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안 제20조의2제4호는 전기사업자가 인수한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으로서, 두 조문이 대상으로 하는 비용의 범위가 서로 다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설비 증설비의 포함 여부 등에서 지원 범위가 서로 다르므로, 개정안과 같이 “운영결손액”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할 경우 지원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용어를 “결손액”으로 하고 안 제20조의2제4호를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의 결손액”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둘째, 의무적으로 지원할 대상을 안 제20조의2제4호 및 제5호로 한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20조의2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다섯 가지를 열거하고 있음.¹¹⁾

1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개정안의 단서는 그 중 제4호와 제5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용은 개정 후에도 임의적 지원 대상으로 남게 됨.¹²⁾

이와 관련하여 제20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이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기술지원과, 자가발전시설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에 대한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 요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함.¹³⁾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2호의 기술지원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22개 도서와 주민 관리 38개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2026년도 예산에서 10억 9,400만원 중 8억 2,100만원이 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편성되어 있어, 나머지 2억 7,300만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됨.

한편 이 법의 기금 지원 규정에 관하여 심사 중인 법률안 2건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개정안과 서로 다름.

12) 제1호의 상환금 초과분은 재정융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신규 융자 실적은 없음.

1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監理)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定期補修) 및 관리·운영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안별 개정 방식 및 의무적 지원 대상 비교]

구분	김원익의원안 (2210218)	권향엽의원안 (2212688)	개정안 (2219142)
개정 방식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개정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개정 및 재정융자금 조항 삭제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신설
해당 문언	“전액을 지원한다”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원 대상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4호 및 제5호
심사 경과	2025. 9. 25. 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	2026. 3. 24. 위원회 상정 및 소위원회 회부	2026. 7. 1. 위원회 회부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할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본문과 단서의 규정 방식 및 자구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그대로 두고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하나의 조문 안에 지원 여부를 재량으로 정한 본문과 전액 지원을 의무로 정한 단서가 함께 놓이게 됨.

또한 안 제20조의2제4호 및 제5호는 지원 대상을 “운영결손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편, 단서는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전액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의 단위가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인지 그 비용에서 산정되는 결손액인지가 문언상 분명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지원의 대상과 부담의 주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¹⁴⁾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 적용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4호 및 제5호의 결손액은 그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정비하는 방안 및 제20조의2를 향으로 나누어 임의적 지원과 의무적 지원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 등 자구 정비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계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지원 비율이 2025년부터 변경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 점, 이 사업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 근거가 명확한 공익사업인 점, 결손액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그 비용이 기금이 아니라 전기요금으로 충당되어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는 점 등을 들어 단서 신설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전력공사는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도서 지역 전기공급에

1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따른 결손액을 총괄원가에서 분리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한 경우, 25%를 부담하게 될 경우 도서 지역의 설비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부담이 다시 총괄원가¹⁵⁾에 반영되어 전기 사용자의 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들어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획예산처는 도서 등 계통이 독립된 지역에 대한 전기공급이 「전기사업법」 제6조¹⁶⁾ 및 제14조¹⁷⁾에 따라 국가와 사업자의 공동 책무에 해당하고, 현재 예산을 통하여 국가가 75%, 사업자가 2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가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이 도서 지역 전기공급에 따른 결손액을 국가와 전기사업자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이 나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5) 총괄원가: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데 소요된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서, 전기요금 산정의 기준이 됨.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 4. (생략)

16) 「전기사업법」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들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 한편 같은 법 제49조제4호는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17) 「전기사업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의 처
02)6788-5537